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결과 발표, 96.3%가 위반사업장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2,371건(65.8%),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보건상의 미조치 158건(4.4%),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등으로, 안전상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455곳에 대해서는 4억8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69곳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기술지원사업과 '집중점검 및 감독'을 병행하여 사업주가 안전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업체 발주청이 직접 선정

정부가 국책사업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건설업체가 선정해 오던 안전진단업체를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이웃소싱을 통한 관리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에 대한 안전성 지적이 잇따르고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라며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현장점검 및 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 그리고 최근의 각종 건설사고와 과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거쳐 현장감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발주자의 역량과 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건설공사에 내재되어 있



는 사고요인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현장의 안전점검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된 제도들은 그동안 간과한 시공자 이외 발주자와 기타 설계·감리자, 근로자 등 여타 건설주체들의 역할을 재조명한 것으로 향후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뿐만 아니라 건설업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

노동부가 산업재해예방 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4개 부문별로 총 247개소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8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192개소, 2008년도에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36개소, 2006~2008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3개소, 2008년도에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6개소 등 총 247개소다. 이들 사업장의 명단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회에 걸쳐 920개 사업장이 공표되었으며, 7회째인 이번 공표를 포함하면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1,167개소에 달한다.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장은 "최근 기업의 이미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근로자가 더욱 각별하게 산재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관련용어 알기쉽게 바뀐다

기존에 전도, 전복, 협착, 붕괴, 도괴, 추락, 낙하, 비레 등 한자어로 표기되어온 산업재해 용어가 우리말로 순화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부 전문가 및 공단 관계자로 TF팀을 구성하고, 산업재해 유형별 용어에 대한 순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순화작업은 그동안 산업재해 명칭이 한자어로 표현되어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의미전달이 어렵고,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되는 '전도' 재해나 '협착' 재해의 경우 어려운 용어로 잘못 이해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도, 협착, 도괴 등 어려운 산업재해 명칭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작업 현장 근로자나 사업주 및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예정 용어로는 전도, 전복, 협착, 비래, 도괴, 전복, 접촉, 추락, 낙하, 붕괴 등 약 20여개로 공단은 국어학자 및 용어순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순화대상 용어선정 및 용어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정된 용어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등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용어로 정리된 안전수칙을 제작해 보급하고 공단 발간자료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의 류보혁 안전시스템연구실장은 "기존의 어려운 산업재해 명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

인체 특성상 무더위는 보통 습도 25°C 이상이면 느낄 수 있다. 만약 이때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열 경련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우발적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8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장시간의 작업과 각종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 책임 하에 작업시간단축 또는 공사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는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대책과 함께 폭염 취약사업장인 고열사업장, 옥외사업장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철업, 주물업·유리공업 등 고열 작업장들은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토록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꾸준히 소금과 음료수를 공급하는 가운데 휴식시간도 적정하게 보장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항만, 건설업 등 옥외 사업장의 경우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과 조끼 등을 착용토록하고, 폭염시 밀폐 공간 작업은 재해 위험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폭염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도심의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화 및 자동차로 인해 온도는 더 높아지므로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중지, 휴식시간제(Heat Break) 실시 등 폭염 안전 관리대책을 적극 실행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지난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등에서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석면지도란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기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건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배출기준을 정해 석면을 먼저 제거한 뒤 건물을 철거하도록 했다. 또 주변 대기중의 석면 농도 측정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 '무석면 건축물인증제'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감리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석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자격제도를 확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조만간 제정키로 했다.

한편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광산이나 공장 등의 석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석면노출이 우려되는 주민들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석면 건강피해구제법'을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장의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위해 총 1천 5백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